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사업운영체제	3
제3장 외부 자문위원 및 전문기관 등록	7
제4장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8
제5장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10
제6장 협약 체결	12
제7장 사업관리 및 평가 등	13
제8장 사업비 정산 및 지급	15
제9장 사업 참여 제한 등	17
부칙	19
별표	20
별지	38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3. 02.

개정 2024. 02.

개정 2025. 09.

개정 2026.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3제1항제4호에 근거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기업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분석, 대응전략 수립, 자문 등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2. “주관기관”이란 총괄기관인 지식재산처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3. “신청기업”이란 지식재산 분야에서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대학, 공공연, 지자체, 협의체, 협회, 단체, 기관 등으로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4. “지원기업”이란 주관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5. “협의체”란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통되거나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간사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수출기업”이란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9. “수출 예정기업”은 현지 시장조사, 계획 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국내기업”이란 국내 소재기업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14. “전문기관”이란 주관기관에 “지원사업” 수행 가능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15.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평가·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서비스(이하 “과제”라 한다)를 수행·제공토록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16. “위원회”란 주관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선정, 평가, 심의 및 그 밖의 사유를 위해 내·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위원회에는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다.
17. “사업비”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경비를 말하며, 주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포함한다.
18. “기준단가”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사전에 과제 유형별로 정해놓은 단가를 말한다.
19. “PM(Project Manager)”이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과제진단, 품질관리, 전략수립 등을 관리하는 내부 자문위원을 말한다.
20.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이나 협의체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평가, 사업지원금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수행인력”이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이 선정·배치한 인력으로서, 수행기관에 소속된 인력뿐 아니라 용역·위임·자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15.>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행기관 등 지원사업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4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
 - 가. 이 지침을 포함한 각종 규정 제·개정 및 운영
 - 나. 사업 기준단가 조사 및 활용
 - 다. PM 및 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인사·교육 등 인력관리
 - 라.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지원기업, 전문기관,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가.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
 - 나. 보고·평가·점검 등 사업 진행관리
 - 다. 선정 취소
 - 라. 경고,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3. 명단 구성·운영 및 관리
 - 가. 외부 자문위원
 - 나. 전문기관
4. 사업 품질확보
 - 가. 사후추적 조사 및 분석
 - 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다.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라. 사업 결과물 DB 구축 및 활용
5. 사업비 집행, 환수, 정산 등 관리
6. 기타 지원사업 관련 총괄기관의 위탁 업무

제5조(PM : Project Manager) ①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4조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과제에 대해 P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PM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담당과제의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과의 주기적인 회의 주관
2. 담당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관리 총괄
3. 담당과제의 우수사례 발굴, 성과관리
4. 기타 담당과제의 PM으로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M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해당 과제 관련 각종 자료,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과제 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PM은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과제를 착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해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의무를 갖는다.

1. 지원사업 협약 체결
2. 기업부담 현금 및 현물 납부
3.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 및 조사 협조
4. 주관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협조
5. 기타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신설 2025. 9. 15.>

제7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의무를 갖는다.

1. 지원사업 협약 체결
2.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4. 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요구자료 제출
5. 과제 수행 단계별 보고·평가 참여
6. 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신설 2025. 9. 15.>
7. 기타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신설 2025. 9. 15.>

제8조(선정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선정
2.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
3. 기타 선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9. 15.>

② 선정위원회는 과제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자문위원의 수가 내부 자문위원보다 적을 수 없다. 단, 지원이 시급하거나 지원기업이 외부 자문위원 심사 기피를 신청한 과제의 경우,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내부 자문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정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정위원) ①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심사 전, 선정위원에게 공정한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1의 심사·평가 기피·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9. 15.>

③ 선정위원은 심사 전, 심사대상인 사안과 자신이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별지 1의 심사·평가 기피·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선정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조치로 심사 당일 참석한 위원 수가 3인 미만이 된 경우, 주관기관은 심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정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선정위원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선정위원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 제안서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비밀유지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선정위원은 심사 결과 확인·인증에 대한 본인 인증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보존해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2. 최종평가

3. 사업비 심의 <개정 2025. 9. 15.>

4. 기타 사업 진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9. 15.>

② 평가위원회는 과제별로 7인 이내의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자문위원의 수는 내부 자문위원보다 적을 수 없다. 단, 평가에 대한 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9. 15.>

제11조(평가위원) ① 주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15.>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협약 해제·해지 심의
2. 사업수행 기성부분에 대한 사업비 인정 금액 심의
3. 과제 수행과정에서 이 지침 위반 여부 및 제재사항 심의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심의

② 주관기관은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관련자 또는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제13조(운영위원) ① 주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항 외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15.>

제14조(정부지원금) ①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지원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현물 및 현금) 30%
 2.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50%, 기업부담금(현물 및 현금) 50%
 3. 협의체, 대학, 공공연, 지자체, 협회, 단체, 기관 등: 정부지원금 70%, 참여기업부담금 현물 30%
- <개정 2026. 4. 3.>

②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비 일부를 공동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을 포함한 지원내용 및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과제 유형) ①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유형은 지원 유형 및 지원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원 유형 : 권리보호(예방), 분쟁대응(대응)
2. 지원 방식 : 개별대응, 공동대응

② 각 유형별 세부과제는 당해 연도 사업공고를 통해 공표하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규유형 또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외부 자문위원 및 전문기관 등록

제16조(외부 자문위원 등록) ① 주관기관은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외부 자문위원 명단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5. 9. 15.>

② 외부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부산하기관, 공공(연구)기관,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비영리단체 또는 기술지주회사, 기업 등의 소속원

2.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력, 자격, 직책 등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등록된 전문기관의 소속원인 경우 <개정 2025. 9. 15.>

2. 당해 지원사업 신청기업, 지원기업의 소속원인 경우 <신설 2025. 9. 15.>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사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9. 15.>

④ 주관기관은 일정 등으로 인해 선정위원과 평가위원의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자문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를 임시로 위촉하고 사후에 외부 자문위원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록 결과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한다.

⑥ 등록된 외부 자문위원은 소속 등 주요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15.>

⑦ 전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한 채 주관기관의 업무에 참여한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외부 자문위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사업 참여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5.>

제17조(전문기관 등록) 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선정심사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관기관의 전문기관 모집공고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재권 관련 조사·분석·대응전략 및 자문이 가능할 것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인력을 보유할 것

가. 책임연구원급 변리사 1인 이상

나. 연구원급 변리사 보유기관 중 책임연구원급 수행인력 1인 이상

3. 전용 사무실 및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지원기업의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이 지침 제50조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5. 9. 15.>

③ 전문기관이 해외소재 기관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

1.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할 것
2. 중간·최종평가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
3.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수행인력의 소속과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4. 전자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

④ 주관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록 결과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 또는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제18조(사업공고) ① 주관기관은 사업 개시 전 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나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공고는 모집대상, 방법, 기간, 선정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자격) ① 신청기업은 다음의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단, 주관기관은 사업 목적에 따라 세부 과제별 자격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사업공고문을 통해 고시해야 한다.

1. 국내 소재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2. 대학, 공공연, 지자체, 협의체, 협회, 단체, 기관 등 <신설 2026. 4. 3.>

② 협의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참여기업 중 간사기업을 지정해야 한다.

1. 3개사 이상의 국내 기업 집단
2.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인 집단

③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 또는 단체도 선정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0조(신청제한) ①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이 이 지침 제19조를 만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폐업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3.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4.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5.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7.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8. 신청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신설 2025. 9. 15.>

9. 기타 사유로 기업의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은 전항을 위배한 정도를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 제49조 및 제50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5.>

제21조(신청방법) 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협의체는 사업공고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는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가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5.>

④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전문기관의 다음 각 호의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전문분야 및 등급별 수행인력 보유 수

2. 전문기관의 소재지, 연락처 및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 현황

3. 기타 전문기관 선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

제22조(수행기관 신청) ① 지원사업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가 지정한 수행기관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 수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23조를 준용하여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반려 및 보완요청) ①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하자 유무를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사 전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정한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서류가 제출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제재조치 중이거나 제재조치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3.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신설 2025. 9. 15.>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 내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5.>

제24조(사전신청제) ①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개시 전이라도, 지원 공백 기간에 발생한 분쟁 현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신청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신청은 모집대상, 방법, 기간, 선정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별도 공고로 진행한다.

제5장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제25조(사전평가 및 선정심사) ①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유형 검토 및 사전 정량평가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별표 3-1 및 3-2의 선정평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 제안업무의 적절성 등을 정성평가하고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탈락시킬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선정위원수가 3인 이하인 경우 모든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제26조(심사 특례) 주관기관은 사전평가 시 지원신청한 기업 또는 협의체에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사유는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전 고시해야 한다.

제27조(선정 및 결과통지) ①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정량·정성 평점 및 가감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②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을 선정할 때 동점인 기업 또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지원 필요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원 후보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③ 주관기관은 선정 결과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 또는 공개한다.

제28조(수행기관 심사) ① 주관기관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별표 3-2의 선정평가표에 따라 수행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② 주관기관은 심사결과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 또는 공개한다.

제29조(수행기관 제한조건) ① 주관기관은 등록된 전문기관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제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을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3.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4.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단, 사업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5.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신설 2025. 9. 15.>
6. 기타 수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9. 15.>

② 주관기관은 전항을 위배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 제49조 및 제50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5.>

제30조(지원기업 선정 취소)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 전 지원기업이나 협의체가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이 지정한 일자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협약 체결 시 경영악화로 과제 수행 여건이 되지 않거나 지정 수행기관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사전동의 없이 협약 체결 시까지 지원기업이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지원기업,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신설 2025. 9. 15.>
7. 기타 사유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5. 9. 15.>

제31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원기업과 연계된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30조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제32조(협약체결) ① 주관기관은 선정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 지원기업이 협의체인 경우 간사기업이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협약에 참여한다.

②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협약체결일 이전에 별지 2의 협약서와 제반서류들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주관기관에 기업부담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원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협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지원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33조(협약 방식) 이 지침 제32조에 따른 협약체결은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되,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의 내규를 따른다. 단, 주관기관 내규 「계약사무처리 요령」 제35조의2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협약 변경)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협약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지원기업명(법인)이나 대표자명(개인사업자) 또는 현물투입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
2. 수행기관의 수행인력, 과업추진계획, 경비지출 비목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과제수행이 불가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기타 과제수행에 있어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은 제1항의 변경 요청시 변경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관기관에 서면 제출 또는 발표 형식으로 신청요지가 포함된 협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일은 사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로 한다.

③ 전 항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요청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협약 이행실태 확인) ① 주관기관은 협약이행 및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표 1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2. 수행인력 및 과업내용 변경 사항
3. 기타 수시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이 지침 및 협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제36조(협약 해제·해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전부가 취소·중단된 경우
2. 협약 후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이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주관기관 사전승인 없이 수행계획을 임의 변경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및 점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6. 선금 무단 전용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7.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협약의 해제·해지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9. 15.>

② 제1항의 각 호 중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기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의 해제·해지 관련 당사자 간 다툼이나 과제수행 기성부분에 대한 사업비 인정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7장 사업관리 및 평가 등

제37조(서면보고) ①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해야 한다.

1. 착수보고 : 협약 체결 이후 사업추진 착수보고
 2. 중간보고 : 협약 시작일로부터 50% 전후 시점에 중간보고
 3. 최종보고 : 협약 종료 전 사업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
- ②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1항의 보고 외 다음의 보고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수행 현황보고 : 중간평가 이전 사업 진행현황 보고
 2.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관련 보고

제38조(중간평가) ①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중간보고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별표 4-1의 평가표에 따라 서면 또는 발표 평가하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평가 계획에 따른다.

③ 중간평가 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모든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④ 주관기관은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 중간평가 결과를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9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최종보고에 대한 평가와 과업의 이행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판단하고, 지원사업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 최종평가는 별표 5-1의 평가표에 따라 서면 또는 발표 평가하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평가 계획에 따른다.

③ 최종평가 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모든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④ 주관기관은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 등 최종평가 결과를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종합평가) ① 주관기관은 매년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종합하여 이 지침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유형별 등급을 결정한다.

1. 과제별 최종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2. 과제종료 후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지원기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3.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른 주관기관의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원활도 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사안별 배점은 최종 평가 70점,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20점, 사업원활도 점수 10점으로 하되, 동일연도에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기관 경우에는 지원유형별 각 과제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유형별 등급은 상위순서에 따라 S(5%), A(25%), B(40%), C(25%), D(5%)의 5등급으로 분류한다.

④ 평가결과는 수행기관별 개별 통지하되, 최하위 등급평가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41조(사후조사) ① 주관기관은 사업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과제 종료 후 5년 내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2. 지원 결과의 파악을 위한 사후 추적조사

3. 지원사업의 성과 조사 및 분석

4. 지원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조사

5. 기타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분석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2조(결과물 활용)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의 사전 동의하에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가공·편집 또는 DB로 구축하고 제3자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보유한 해외 지재권 보유 현황
2.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의 분석·검증 정보
3. 기타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단, 지원기업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동의한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이 지침 제26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공고문을 통해 사전 고시해야 한다.

제8장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제43조(사업비 정산) ① 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등 비목별 집행내역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별표 7의 사업비 정산 기준표에 따라 과제별 정산내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목별 예산의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의 부합 여부
2. 예산 또는 수행인력·투입률·기간 변경 시 사전 보고·승인 여부
3. 기타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해진 기일내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 완비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과제의 기성부분 대가를 심의·의결 후 정산할 수 있다.

제44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수행기관은 이 지침 제43조에 따른 정산을 마친 다음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2.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3. 계약상대자로부터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15.>

제45조(인건비 계상) ①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당해 연도 기재부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별표 2의 수행인력 등급 기준을 공지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수행기관 선정조건에서 명시한 인력투입 범위를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제46조(선금 지급)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정부지원금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9. 15.>

제47조(사업비 감액)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별 사업비를 별표 10에 기준하여 감액하고, 정부지원금은 기업부담금과의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가 심의·의결된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과다계상이 확정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인건비 초과 계상인 경우

②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업비가 변동되었음에도 변경신청을 누락한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8조(지급중단 및 반환) ① 주관기관은 협약이 해제·해지 된 경우 즉시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금에 대한 반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이 지침 제3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제·해지가 명백히 예상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중단이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장은 사안에 따라 의결 전 선 조치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신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전용한 경우
3.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중 어느 일방이 요청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③ 주관기관은 각 항의 이행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장 사업 참여 제한 등

제49조(경고)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전을 포함한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3. 제37조 내지 제39조의 보고·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중간·최종 평가 또는 수시 점검의 조치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6. 제41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지원사업 수행인력 및 수행과제를 변경하거나, 수행인력 아닌 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운영 상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0조(사업참여 제한) ①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전을 포함한 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에 사업참여 제한 조치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 주관기관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 각 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6. 제40조의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제40조제2항의 결과가 80점 미만인 전문기관이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 지원유형으로 수행 신청한 경우
7.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에는 해당 협약조건에 따른다.

②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참여 제한 및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2. 제36조제1항제7호의 부당한 거래행위로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 ④ 주관기관은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수행기관의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8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선정 취소 결정
 2. 제36조에 따른 협약 해제·해지 결정
 3. 제40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최하위 등급 평가
 4.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부지원금 감액, 지급중단, 반환 결정
 5. 제49조에 따른 경고 결정 <신설 2025. 9. 15.>
 6. 제50조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결정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별표 9의 이의신청 심의서에 따라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자 의견 청취 및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④ <삭제 2026. 4. 3.>

제52조(비밀유지) ①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운영 중 취득한 신청·지원기업의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주관기관에 제1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수행기관과 외부 자문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및 외부 자문위원은 지원사업 참여 중에 취득한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개인정보보호)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4조(부정행위 방지)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 유착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전항의 유착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9.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6. 4.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별표 목록 >

[별표1]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P.19
[별표2]	전문기관 연구원 등급 및 외부 전문가 등록 요건	P.21
[별표3-1]	기업(협업체) 선정평가표	P.22
[별표3-2]	수행기관 선정평가표	P.24
[별표4-1]	중간 평가표	P.25
[별표4-2]	중간 평가 세부기준	P.26
[별표5-1]	최종 평가표	P.27
[별표5-2]	최종 평가 세부기준	P.28
[별표6]	사업원활도 평가표	P.29
[별표7]	사업비 정산 기준표	P.30
[별표8]	이의신청서	P.31
[별표9]	이의신청 심의표	P.32
[별표10]	최종평가 감액기준	P.33

[별표1] 현장점검 체크리스트<개정 2023.2.28.>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수행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순번	과제번호	지원기업명	지원사업 유형	수행인력	
1					
2					
3					
4					
5					
합 계			총 건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 분리된 전용사업장 보유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 수행인력의 수행기관내 전용 업무공간 존재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 수행기관내 수행인력 대면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 수행인력의 실제근무 및 인력 변동 여부 (업무분장 및 인력변동 사전보고 여부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 검색 DB 보유현황과 신청서 내용의 일치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 사업장 보안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점검결과설명			

점검 의견

번호	수행인력 성명	담당과제 및 업무분장	서명	비고(부재 사유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별표2] <개정 2026. 4. 3.>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연구원 등급 및 외부 전문가 등록 요건

□ 전문기관 연구원 등급

등 급	기 준
책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Master's degree) 취득 후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Doctorate)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변호사(Attorney)·변리사(Patent Attorney)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경력자 • 기타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민간자격증 및 경력 보유자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취득 후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Master's degree) 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Doctorate)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변호사(Attorney)·변리사(Patent Attorney)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민간자격증 및 경력 보유자
연구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Associate's degree)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자 • 기타 동등이상 학력 및 경력 보유자

* 변호사 및 변리사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개업여부 확인예정(휴업상태인 경우 경력 미인정)

□ 외부 전문가 등록 요건

① [소속요건] 분야별 소속요건을 충족할 것

* 지재권 분야 퇴직자 등 현재 소속이 없으나 지재권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력보유자에 한하여 소속요건의 예외 인정

소속요건	정부산하기관, 공공(연구)기관,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비영리단체 또는 기술지주회사, 기업 등의 소속원
------	---

② [자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경력요건	박사, 석사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각각 3년, 7년 또는 10년 이상 경과한 자
자격요건	변리사·변호사·기술사 자격증(동급 해외자격 포함)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직책요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관리자급(책임연구원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 수행자
기타요건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보유자

③ [거절 사유] 다음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당해년도 지원사업 과제 참여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소속원인 경우
- 불성실·불공정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선정·심사·평가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리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등록된 전문기관의 소속원인 경우
- *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별표3-1] 기업(협업체) 선정평가표<개정 2026. 4. 3.>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기업협업체 선정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차등	15점	[참고1] 기업(협업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 협·단체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지식재산 보유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15점						
정성 (70점)	권리보호 필요성	영업활동 관련 상표·디자인의 보호 필요성 [공동대응] 협업체 기업 간 공동 대응 필요성 추가	25점	25	21	17	13	9	탈락
	지원시기 적절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25점	25	21	17	13	9	
	지원 효과성	과업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 및 가능성 [공동대응] 협업체 지원을 통한 파급력 등 영향 평가 추가	20점	20	17	14	11	8	해당 없음
정량 (-5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정성 (-15점)	과거 지원 관련성 (권리보호 유형만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5점	-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OR 국가 동일	-10점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AND 국가 모두 동일	-15점						
정량 (5점)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가점		5점	[참고2] 참조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평가결과 80점 이상, 선정					

참고

기업(협약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정량 (30점)	기업(협약체) 규모	중소·중견 등 차등	15점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협단체, 지자체, 기관 등	중견기업	대기업	-
	지식재산 보유 건수* (기업,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상표·디자인권 보유 건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등록2건 또는 등록건+ 출원건 또는 출원3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협·단체 규모(협·단체)	회원사 수	15점	20개社 이상	20개社 미만	10개社 미만	3개社 미만

* 지식재산 보유 건수 : 상표·디자인에 한함.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

** 협약체의 경우, 협약체 참여기업별 평균값으로 산정

참고2

가점·감점 기준

구분	연번	항목	배점	비고
가점 (최대 5점)	1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제출
	3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5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확인서 제출
	5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5점	보호원 공문 또는 보호원 제공 자료(연간보고서 등) 제출
	7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2점	상담·자문 지원 확인 공문 제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시에만 가점 적용)
	8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제출
	9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당해연도 기관 추천 공문 제출
	10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회원증 제출
	11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12	뿌리산업 확인서	2점	3년 이내 발급한 확인서
	13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제출 (총 기술개발기간 내 유효)
	14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15	혁신조달기업	2점	정부부처 발급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출
	16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유효기간 내 확인서
	17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관련 증명서 제출
	18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19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감점 (최대 5점)	20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과거 3년간(22~24년) 조사에 1회라도 미응답 시 감점

* 참고3 하단 표에 기재된 기업에 한정

참고3

가점 · 감점 세부사항

구분	연번	항목	배점	세부사항
가점 (최대 5점)	1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발급기관) 대전테크노파크, 인천/충남/강원 지식재산센터 (증빙서류)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유의사항) 인천/대전/충남/강원 연계지원 기업은 증빙 불필요하며 자동 5점 부여 지방정부 공고가 아닌 일반공고로 신청한 경우 RIPC(인천, 충남, 강원), TP(대전)에서 추천서 받은 기업은 추천 공문 제출 시 5점 부여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증빙서류)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3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 시 인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단,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는 유효기간 없음)
	5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발급기관) 소부장 특화단지 산학협력단 등 (증빙서류) 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문의필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특화단지 주소, 업종 확인)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증빙서류) 당지원사업 관련 보호원 공문 또는 제공 자료(지원결과물 등)
	7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2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센터 (증빙서류)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확인 공문 (문 의 처) 영업비밀센터 (유의사항)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시에만 가점 적용
	8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발급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증빙서류)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9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지방정부 연계 지원 참여기관 제외) (증빙서류)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10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증빙서류) 회원증
	11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증빙서류)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 확인 공문 (유의사항) '가입증서'의 만기일 확인, '법률자문 확인 공문'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및 '법률자문을 받음'이라는 내용 확인 필요

구분	연번	항목	배점	세부사항
	12	뿌리산업 확인서	2점	(발급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증빙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
	13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4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발급기관) 기업 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증빙서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5	혁신조달기업	2점	(발급기관) 각 정부부처 (증빙서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유의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서
	16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17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	2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 (증빙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유의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발급된 확인서
	18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발급기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또는 World Class300 기업 지정서 (유의사항) 월드클래스 졸업기업 제외
	19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발급기관) 지식재산처 (증빙서류)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의거 발급된 인증서
감점 (최대 5점)	20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간(22~24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관련기관 참고

<p>(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인천·충남·강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대전 테크노파크</p> <p>(MOU 체결기관) 서울·경기북부·충북·전북·전남·광주·대구·경남·부산·울산·제주 지역지식재산센터, 경기·경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 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완구협회, 한국 캐릭터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라이센싱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p>

[별표3-2] 수행기관 선정평가표<개정 2026. 4. 3.>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성 (100점)	사업 이해도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30점	30	26	22	18	14	해당 없음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40점	40	35	30	25	20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30점	30	26	22	18	14	
가점 (3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		3점	-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과제의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제 수행적합 및 집중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만 진행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심사점수 80점 미만(집중관리 대상)일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지원유형별 수행기관 평가 상세 기준]													
<p>○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유형 맞춤형 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제조 분야 IP 보호</td> <td>현지 권리와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도(단순 해외 출원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td> </tr> <tr> <td>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td> <td>국가별 제도와 디자인 권리 및/또는 연계 상표/저작권 보호 전략에 대한 이해도</td> </tr> <tr> <td>콘텐츠 분야 IP 보호</td> <td>콘텐츠 IP와 OSMU 개념에 기반한 IP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td> </tr> <tr> <td>상표무단선점 대응</td> <td>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한 대응수단 및 권리회수전략에 대한 이해도</td> </tr> <tr> <td>위조·형태모방 대응</td> <td>위조·형태모방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수단에 대한 이해도</td> </tr> </tbody> </table>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도(단순 해외 출원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국가별 제도와 디자인 권리 및/또는 연계 상표/저작권 보호 전략에 대한 이해도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와 OSMU 개념에 기반한 IP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한 대응수단 및 권리회수전략에 대한 이해도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수단에 대한 이해도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도(단순 해외 출원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국가별 제도와 디자인 권리 및/또는 연계 상표/저작권 보호 전략에 대한 이해도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와 OSMU 개념에 기반한 IP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한 대응수단 및 권리회수전략에 대한 이해도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수단에 대한 이해도												
<p>○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유형 맞춤형 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제조 분야 IP 보호</td> <td>지원기업 현황, 신청 상표,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td> </tr> <tr> <td>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td> <td>지원기업 현황, 신청 디자인,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td> </tr> <tr> <td>콘텐츠 분야 IP 보호</td> <td>콘텐츠 내용, 사업화 현황, 벤치마킹 경쟁사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td> </tr> <tr> <td>상표무단선점 대응</td> <td>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 권리회수전략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td> </tr> <tr> <td>위조·형태모방 대응</td> <td>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td> </tr> </tbody> </table>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상표,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디자인,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내용, 사업화 현황, 벤치마킹 경쟁사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 권리회수전략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상표,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디자인,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내용, 사업화 현황, 벤치마킹 경쟁사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 권리회수전략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p>○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유형 맞춤형 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제조 분야 IP 보호</td> <td>현지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td> </tr> <tr> <td>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td> <td>국내외 디자인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td> </tr> <tr> <td>콘텐츠 분야 IP 보호</td> <td>콘텐츠 IP 보호 로드맵 및 권리화 전략에 대한 실현 가능성</td> </tr> <tr> <td>상표무단선점 대응</td> <td>무단권리선점 해소 및 권리회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td> </tr> <tr> <td>위조·형태모방 대응</td> <td>위조·형태모방의 해소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td> </tr> </tbody> </table>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국내외 디자인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보호 로드맵 및 권리화 전략에 대한 실현 가능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 및 권리회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의 해소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국내외 디자인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보호 로드맵 및 권리화 전략에 대한 실현 가능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 및 권리회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의 해소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중간 평가표

지원기업 :

수행기관 :

과제번호 :

No	구분	평가항목	내용 설명	배점 (100)
1		과업수행 과정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맞게 과업을 충실하게 진행하였는가? ▪ 지원기업과 원활하게 협업하여 과업을 진행하였는가? ▪ 선정심사의견 및 보완요청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
2	공통 평가 (60점)	과업수행 결과물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안별 검토 및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위의 내용이 중간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20
3		향후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 이후의 대응전략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20
4	특화 평가 (40점)	유형 맞춤형 평가 1	별첨의 유형 맞춤형 평가 기준 참고	20
5		유형 맞춤형 평가 2	별첨의 유형 맞춤형 평가 기준 참고	20
		평가의견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표4-2] 중간평가 세부기준<개정 2026. 4. 3.>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중간 평가 세부기준

구분	유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특화평가 (40점)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40점)	해외현지 권리화 전략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대상 및 필요성을 적절하게 조사·분석하였는가? ■ 제품(서비스) 기반 맞춤형 권리화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한국경제비
		등록가능성 검토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대상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 권리화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선정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콘텐츠 분야 IP 보호 (40점)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의 콘텐츠별 IP 포트폴리오를 충실하게 검토·분석하였는가? ■ 선도기업 또는 경쟁사의 참고 사례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콘텐츠 IP 로드맵 전략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MU개념에 따라 콘텐츠 IP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OSMU개념에 따라 맞춤형 권리화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40점)	디자인 권리화 전략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대상 및 필요성을 적절하게 조사·분석하였는가? ■ 디자인 및 국가별 제도 특징 적절하게 분석하였는가? ■ 디자인 출원 방식이 적절하고 상표 또는 저작물 해당성 검토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가? 	20점	20	17	14	11	8	
		등록가능성 디자인 출원 및 권리전략 적절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 조사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 권리화 대상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 권리화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선정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무단 선점대응 (40점)	무단선점 대응수단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사실 및 무단선점 현황을 적절하게 조사·분석하였는가? ■ 무단권리선점에 대한 대응가능수단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회수전략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선점권리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 형태모방 대응 (40점)	위조·형태모방 현안 분석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사실 및 위조·형태모방 현황을 적절하게 조사·분석하였는가? ■ 현지 실태조사(시장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형태 모방 대응수단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대응가능수단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 형태모방 대응(민관 협력형 1단계) (40점)	실태조사 계획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사실 및 위조·형태모방 현황을 적절하게 조사·분석하였는가? ■ 산업단체, 지원기업 및 현지조사기관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실태조사 이행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실태조사(시장조사)를 적절한 시점에 착수하였는가? ■ 다양한 전략에 의한 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형태 모방 대응(민관 협력형 2단계) (40점)	위조·형태모방 대응수단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형태모방 해소를 위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확정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형태모방 대응수단 이행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입증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응수단 준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20점	20	17	14	11	8		
각 유형별 합 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최종 평가표

지원기업 :

수행기관 :

과제번호 :

No	구분	평가항목	내용 설명	배점 (100)
1	공통 평가 (60점)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맞게 과업을 충실하게 완료하였는가? ▪ 지원기업과 원활하게 협업하여 과업을 완료하였는가? ▪ 중간평가의견 및 보완요청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
2		과업수행 최종결과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에 따른 전략수립과 실행이 적절하게 완료되었는가? ▪ 지원기업이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20
3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예상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20
4	특화 평가 (40점)	유형 맞춤형 평가 1	별첨의 유형 맞춤형 평가 기준 참고	20
5		유형 맞춤형 평가 2	별첨의 유형 맞춤형 평가 기준 참고	20
평가의견				

감액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감액필요금액	천원
평가의견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표5-2] 최종평가 세부기준<개정 2026. 4. 3.>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최종 평가 세부기준											
구분	유형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탈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특화분야가 (40점)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40점)	권리화 대상 선정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대상에 대한 출원표장 및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 (선택) 해외 현지 권리화를 위한 회피전략을 적절히 수립 및 실행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해외현지 권리화 실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전략에 따라 충실하게 상표출원을 완료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콘텐츠 분야 IP 보호 (40점)	콘텐츠 IP 로드맵 전략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특성 및 사업 단계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콘텐츠 IP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적권 관리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콘텐츠 IP 권리화 전략 실행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충실하게 권리화 진행을 완료하였는가? ■ (선택) 콘텐츠 해외진출 관련 계약서를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일반 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40점)	권리화 대상 선정 적절성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 대상에 대한 디자인 및 출원방식을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 (선택) 디자인 권리화를 위한 회피전략을 적절히 수립 및 실행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디자인 등록가능성 검토 실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등록가능성을 충실하게 검토 완료하였는가? ■ 디자인 등록가능성 검토 후 피드백을 적절히 완료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무단선점 대응 (40점)	무단선점 대응수단 실행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해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회수전략 실행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선점권리에 대한 최적의 회수전략(출원, 양수 등)을 수립 및 실행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 형태모방 대응 (40점)	위조 형태모방 대응수단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형태모방 해소를 위해 최적의 대응전략을 확정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위조 형태모방 대응결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입증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응수단 준비를 충실하게 완료하였는가? ■ 위조 형태모방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결과가 도출되었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 형태모방 대응 (민관 협력형 1단계) (40점)	실태조사 결과물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결과물이 도출되었는가?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입증자료가 대응수단에 활용 가능한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위조 형태모방 대응수단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형태모방에 대한 대응가능수단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는가? ■ 해외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위조 형태모방 대응 (민관 협력형 2단계) (40점)	위조 형태모방 대응결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조 형태모방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결과가 도출되었는가? 	20점	20	17	14	11	8	평가점수	
		사후관리 전략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되는 결과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20점	20	17	14	11	8		
	각 유형별 합 계				100 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업원활도 평가표

과제 번호 :		수행기관 :		기업명 :	
구 분	평가지표	평가점수(기본 10점)			
		기 준	감 점		
과업수행 원활도	착수계/완료계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중간보고서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최종보고서 제출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보완 요청사항 반영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지정기한 미준수)	1~2점			
행정처리 원활도	행정업무 협조	원활(지정기한 준수)	0점		
		미흡(소극적 업무협조 또는 비협조)	1~2점		
합 계					

[별표7] 사업비 정산 기준표<개정 2023.2.28.>

사업비 정산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

구분	정산 증빙서류	제출방법		
수 행 기 관	[붙임1] 지원사업 비용집행 총괄표	온라인 작성		
	[붙임2] 지원사업 비용 집행 세부내역 1부	시스템업로드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인력의 ①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 확인용),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대표 및 그 외 친족, 외국인등 고용보험가입예외자 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택일하여 제출 (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 변경이력 있을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투입인력별 당해연도 갑중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시스템 업로드	
		<p>※ 사업장대표 또는 등기임원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인건비를 실제 급여로 정산하지 않음, 단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된 인건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불인정 * 필요시 보호원에서 인건비 지급 통장내역, 투입인력의 과제관련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 과제 참여 증빙 제출 요청 가능 	이메일제출	
	경 비	자 문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보이스(청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일(과업기간 종료일 이전), 청구내용 및 금액,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 기재 ▪ 계좌이체 증명(송금영수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대리인의 재직기관으로의 송금도 인정 * 수행기관이 아닌 지원기업에 의한 송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인정, 예산 초과 금액 불인정 ▪ 지원사업 관련 국내외 자격·전문가 활용 요청서 (국내전문가 활용시 계약서 첨부),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 사업참여 증빙자료, 활용 결과물 일체 	시스템업로드
		유인물비 (위탁정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비용 입금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원이 지정한 회계법인만 인정, 그 외 불인정 	정산 완료 후 시스템 업로드
기 업	[붙임3] 기업 현물출자 확인서	시스템업로드		
	기 업 현 물 부 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물부담 투입인력의 ①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 확인용),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대표 및 그 외 친족, 외국인에 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택일하여 제출 (협약종료일 이후 발급) ▪ 현물부담 투입인력과 수행기관간 현물부담 관련 회의사진, 이메일 등 정보교류 내역 ▪ 현물부담 투입인력과 수행기관간 현물부담과 관련한 이메일 등 정보교류 내역 <p>*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 불인정</p>	시스템업로드	

일반적인 사업비 집행 불인정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집행내역의 확인 불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는 사업비 변경 및 집행 3.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4.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8] 이의신청서<개정 2023.2.28.>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주 소			
과제 개요	협약명			
	지원기업명		지원기업담당자	
	수행기관명		수행책임자	
	협약기간		협약금액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선정취소 <input type="checkbox"/> 협약해제·해지 <input type="checkbox"/> 수행기관등급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반환·감액지급 <input type="checkbox"/> 사업참여제한			
이의신청 내용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20px;">*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p>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표10] 최종평가 감액기준<개정 2026. 4. 3.>

과업 유형 및 (단위)과업		(단위)과업의 이행 및 평가 정도	(단위)과업의 의무사항을 일부만 이행하지 않고 증빙이 다소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일부 불응하는 경우	(단위)과업의 의무사항을 일부 이행하고 증빙이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일부 불응하는 경우	(단위)과업의 의무사항을 노력하지 않고 일부만 이행하고 증빙이 매우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전부 불응하는 경우 <경고>	(단위)과업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증빙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전부 불응하는 경우 <경고>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해외 출원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회피방안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콘텐츠 분야 IP 보호 (중장기)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OSMU 기반 해외 출원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회피방안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계약전략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디자인 출원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 조사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국내외 선행 디자인 검토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디자인 회피방안 제시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해외 상표 출원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국내외 저작권 등록 신청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대응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이의신청 대응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회피방안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무단선점 대응전략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상표무단선점 회수전략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협상전략	일부 감액(30%)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회피방안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민·형사 소송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행정·형사 단속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민·형사 소송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경고장 발송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 위조·형태모방 역공격 대응전략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경고장 대응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무효, 취소심판 등 대응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소장 대응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민·형사 소송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역공격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회수전략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회피방안 제시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전략	기본 (단위)과업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분쟁조정 신청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민사 소송 제기 또는 대응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협상전략	일부 감액(30%)-절반 감액(50%)	절반 감액(50%)-대부분 감액(70%)	대부분 감액(70%)-전액 감액(100%)	전부 감액(100%)
	도메인 회피방안 제시	일부 감액(30%)	절반 감액(50%)	대부분 감액(70%)	전부 감액(100%)

< 별지 목록 >

[별지 제1호서식]	심사·평가 회피신청서	P.34
[별지 제2호서식]	지원사업 협약서 및 불임서류 양식	P.35

심사(평가)위원 심사·평가 기피·회피신청서

과제명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심사(평가)대상 기피·회피 여부 및 기피·회피 사유

연번	과제번호	기업명	여부	기피·회피 사유
			O/X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협약조건

제1조(목적) 본 협약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행기관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금액"은 "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의 합산금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지원금을 공동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기업 부담금"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기업 부담금"은 현금부담금과 현물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지원기업의 현물부담금인 현물출자는 지원기업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 인력참여 기타 자료·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과제비"는 수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원금과 지원기업 현금부담금의 합산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범위 등) ① 지원기업의 현물출자 내용과 수행기관의 업무 내용은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한다. 이 경우 조사·분석·전략수립·전략실행의 업무는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정한다.

- ②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내용 이외의 추가업무를 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협의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협약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변경이 협약금액의 증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행기관 3자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업무범위의 해석상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주관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업무추진) 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수행인력을 투입하여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 ②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현물출자 인력현황에 기재된 수행인력을 투입하여 현물출자 업무를 이행한다.
- ③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추진방향 자문(평가)을 수행한다. 다만 협약기간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자문은 생략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진현황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의 추진현황보고와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합병, 대표자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인력 등 변경) ①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수행인력, 투입률, 투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투입인력의 퇴사, 휴직 등의 사유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주관기관에 사전 또는 변경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에 변경사항을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가 3주 이내일 경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지원사업 투입인력 또는 과업 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① 수행기관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원기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제공한 물품,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검사) ①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업무수행 중간결과를 기재한 중간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제4조제3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에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7일 전까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이 제3항의 기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과제비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과제비 지급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서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평가를 위해 내·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에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제3항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은 제3항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수행기관에 지시하고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6항의 제출받은 날은 지원기업이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 하여 7일 이내 완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과제비 등) ① 수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비용은 과제비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선금을 신청할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협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이 제8조제6항 및 7항에 따른 완료 승인을 한 경우, 수행기관은 과제비(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중 잔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합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주관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 정산을 완료하고, 주관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전항에 따라 과제비 청구를 받은 경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과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와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과제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과제비의 감액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절차는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며, 과제비의 감액이 확정된 경우에 수행기관은 다시 주관기관에게 감액된 과제비에 따라 과제비를 수정청구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제비의 감액이 확정되면, 수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수정청구한 과제비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과제비를 지급하며, 감액된 과제비 중 지원기업의 현금부담금 비율(지원금과 지원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현금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협약조건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에 반환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청구 후 제5항의 감액 통지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수행기관은 제8조7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업 완료 승인 후, 아래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산종료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유관기관 공동지원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각각 발행)에게 발행하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수행기관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소재 법인일 경우, 인보이스를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에게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하고 청구하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기업으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제10조(과제비의 감액, 환수 등)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과제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과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서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첨부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신청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과제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업무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상호 간의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이때 “부당한 거래행위”라 함은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과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기간을 전후하여 지원기업에게 지급(증여·대여·투자 등의 명분을 불문하며, 차용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행기관이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당한 거래행위로 간주한다)하거나, 수행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원기관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이 본건 사업의 취지나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합의를 하거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행인력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8조의 보고서가 타사업의 결과물 또는 본 사업과 동일한 과거사업의 결과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비가 감액된 경우, 주관기관은 감액된 과제비 중 지원기업의 현금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에 반환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에 대한 환수금액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에게 지급할 동일 또는 다른 회계연도의 타지급금(상계가 가능한 지급금에 한한다)이 있을 때에는 환수금액과 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가 본 사업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본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 목적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부도,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파산신청, 영업정지, 영업폐쇄, 폐업신고, 수행인력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의 실익이 없거나 업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기업의 현물출자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5.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협약기간 내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6조, 제8조(중요사항이 누락된 보고서는 보고에 불응한 것으로 봄)에 규정된 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7.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점검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8.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행인력이 아닌 타인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
 9. 수행기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지원기업이 본 협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10. 중간보고 이후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업무 또는 본 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11.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에게 과제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기지급받은 과제비(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주관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수행기관의 인력투입 및 투입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금액(이하 '기성금액'이라 한다)이 기지급받은 과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주관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지급받은 과제비가 기성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과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지원기업 및 주관기관에게 기성부분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관기관은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수행기관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는 잔여 과제비 중 지원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원기업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기성금액을 지급(선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기성금액 중 지원기

업의 현금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업참여 제한)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최대 3년
2.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업참여 제한 및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3. 본 사업의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 수행기관에 대하여 동일 지원유형 참여제한 1년
4. 지원기업이 현물출자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한 경우 :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업의 신청제한 1년
5. 지원기업이 수행기관의 정당한 중간·최종보고를 막은 경우 :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업의 신청제한 1년
6.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의 참여제한 1년

② 주관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를 2회 이상 조치한 경우 해당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영구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내용은 사업별 세부내용, 사업예산, 추진일정, 환경의 변화 등 명백한 사유와 사업관리감독 기관의 정책현안 및 상황 등에 따라 주관기관, 지원기업, 수행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등 금지)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은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본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제3자로부터 특허권 또는 저작권·초상권 등의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업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 등의 귀속) ① 주관기관과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이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도 같다.

② 수행기관은 주관기관 및 지원기업의 승인 없이 본 사업 결과물의 양도, 복사, 처분, 전송하지 못한다.

③ 수행기관은 협약기간의 만료 후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품, 자료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중간보고회 및 제8조제5항의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주관기관이 본 사업의 정책 보고서의 작성, 감사,

기타 자료제출요구 등을 이유로 정부 및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유지) ①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제16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행기관은 수행인력은 물론 수행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행기관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한 관계자는 그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종료 후 조사)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본 협약 진행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그 유사사업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현황조사(기업현황 관련 설문(만족도, 사후조사 등)을 포함한다)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통지, 보고 등의 방법) 본 협약에 따른 통지, 합의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되 지원기업이 인쇄물을 별도 요청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지원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적용 및 준용규정)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보고, 관리, 제재, 환수 및 참여제한 등에 대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업운영지침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협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및 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② 기타 정보 -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관련 기관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나 등급>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금지행위	벌칙
중대 위반	1. 보호원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식재산치 시스템 접속 또는 조작 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 나. 승인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 3. 제한구역 보안관리 소홀 가.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 출입문 열쇠 방치 다. 출입문 열쇠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라. 승인받지 않은 작업자의 출입 * 제한구역 : 전산실 및 보호원이 지정한 제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부과 (500만원 이하) ■ 행위자·감독자 확인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행위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위반	1. 보호원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원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안규정 위반 가. PC 봉인지 임의훼손 또는 보안USB 프로그램 임의해제 나. PC CMOS.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다. 전산장비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 노출 3. 인원 보안관리 위반 가.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업 투입인력 교체 나. 출입증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부과 (300만원 이하) ■ 행위자 확인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행위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금지행위	벌칙
경미 위반	<p>1. 보호원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p> <p>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나. 출입문 열쇠 방치 다. 출입문 열쇠의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p> <p>3. 전산장비 보안관리 미흡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 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CMOS.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회 이상 위반시 위약금 부과 (100만원 이하) ■ 행위자 확인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주의	<p>1. 보안절차 준수 미흡 가. 보안관련 서류 미제출 * 보안관련 서류 :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대표명의 협약서 나. 정기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보고서 미제출 다.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라.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p> <p>2. 안전조치 불이행 가. 최종 퇴실전 사무실 소등 및 전산장비 전원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확인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붙임2]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¹⁾

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협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기간은 다음과 같다.

협약 기간 : 2000년 0월 0일 ~ 2000년 0월 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이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이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이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이용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이용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6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 장 : (인)

공급자
{{수행기관주소}}
{{수행기관명}}
대 표 : {{수행기관대표자}}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협약시작일

서 약 자 : **수행기관명** 대표 **대표명**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비밀유지서약서

본 비밀유지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함)이 추진하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의 지원기업(이하 '지원기업'이라 함)에 매칭된 과제 수행기관(이하 '서약자'라 함)의 과제 참여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비밀유지 의무)

- ① 서약자는 본 협약서 체결일 이후 과제가 여하히 진척되는가에 불문하고 제공 받거나 서약자가 조사·분석한 모든 정보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음)를 지원기업으로부터 사전동의 없이 보호원을 제외한 특정의 제3자 또는 일반공중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 ② 서약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보호원과 지원기업에 대한 보고는 공개로 보지 않는다.
 1. 지원기업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또는 당해 비밀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하였다는 사실
 2. 과제와 관련된 논의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3. 지원사업의 가격이나 조건, 지원사업의 진척 상태, 기타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실
 - ③ 서약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서류 또는 일체의 기록 및 저장물을 지원기업의 사전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보호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 ④ 서약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정보를 과업을 수행하는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신설 2026. 4. 3.>

제 2 조 (비밀정보)

본 서약서에 의한 비밀정보는 서약자에게 제공된 과제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본 서약서의 체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제공된 일체의 정보이며, 또한 서면, 구두, 전화, Facsimile, E-mail, Diskette Copy 등의 수단방법을 불문하고 제공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의 제공자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관계인인지를 불문한다. 또한 본 서약서에 의한 비밀정보에는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관계회사 및 제휴회사 또는 과제에 관한 정보로서 제공된 원본, 복사본, 요약본 등을 포함하여 서약자 또는 관계인이 작성한 설명, 주석, 분석, 재작성, 연구, 기타 형태의 정보자료를 망라한다.

제 3 조 (비밀정보의 예외)

- 본 서약서에 의한 비밀정보의 범위에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보호원 또는 지원기업이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
 2.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를 승인하고서 제공하는 정보.
 3. 서약자의 정보 입수 출처가 본 서약서의 규율대상이 아닌 경우
 4. 서약서의 비밀정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5.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 단,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도 지원기업과 관련하여 지원기업이 조사하여 별도로 서약자에게 제공하거나 서약자가 과제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내용은 공개된 정보로 보지 않음

제 4 조 (관계인)

- ① 서약자는 보호원 및 과제에 관한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② 서약자는 과제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인의 명단을 보호원 및 지원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서약자는 과제에 관한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인에게도 본 서약서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서약자는 관련 인원의 퇴사나 이직, 하도급 등의 이유로 면책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 5 조 (비밀정보의 반환)

서약자는 과제의 중단 또는 보호원의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자 및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요약본, 기타 업무를 위하여 재가공한 것 등을 막론하고 일체를 즉시 폐기하지 않는 한 보호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공개)

서약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지원 기업에 고지하고 지원기업과의 합의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서약자는 서약자 자신이나 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비밀정보의 승인 받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손해, 손실, 크레임 및 채무부담(변호사 비용 및 면책과 보상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손해 등'이라 함)으로부터 보호원을 완전히 면책하며, 지원기업이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한다.

제 8 조 (비밀정보 준수기간)

서약자는 과제와 관련하여 인지된 모든 정보를 본 서약서 조건에 의거하여 최종 정보 제공 이후 3년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다. 퇴사자, 청산,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이를 항변하지 못한다.

본 서약서는 보호원이 서약자간 체결한 본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약자 본인의 충분한 검토와 판단에 따라 지원기업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위원회에 본 서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협약시작일}}

수 행 기 관 : {{수행기관명}}

대 표 자 : {{수행기관대표자}} (인)

{{기업명}} 대표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위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보호원”에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사업 수행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보호원”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해 “보호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협약시작일}}

소 속 : {{수행기관명}}

주 소 : {{수행기관주소}}

대 표 자 : {{수행기관대표자}}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현물출자 인력현황

□ 과제개요

과제번호			
지원기업		지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수행기관			
협약기간			
총사업비	원	현물 금액	원

□ 지원기업 현물출자 인력 투입현황

구 분	성명	직책	월 단가	투입률 (%)	투입 기간	현물(인건비)	수행업무
책임연구원	홍길동	대표	기재요령참조	30	3	0	지원사업에서 수행할 역할(업무) 기재
합 계							

기재요령

(작성 후 삭제 必)

- 월 단가는 「당해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기준으로 적용(실제급여가 아님)
- 수행책임자는 부서장급 이상, 연구원은 선임/대리급 이상, 연구보조원은 사원급 이상
- 투입률(소수점 3자리까지 가능)을 조절하여 현물금액 합계가 맞도록 작성하되, 산출식 계산 결과는 천단위까지 초과 가능(합계금액은 초과 분 절사)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기업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납부(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협약시작일}}

{{기업명}} 대표자 {{기업대표자명}}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파일 별도 제출 필요)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기업)

당사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온라인시스템 작성 내용으로 지원 신청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당사는 간사기업이 협의체 참여기업들을 대표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결정하는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함
- 당사는 지원사업 3자협약(보호원-지원사업-수행기관) 체결을 위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각 전자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전자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되는 온라인협약 체결 방식에 동의함
- 당사는 당사에서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을 지정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전에 보호원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음
- 당사는 선정 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의일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 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함
- 당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당사는 지원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등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조치에 동의함
- 당사는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충실히 응할 것임
- 당사는 수행기관이 당사를 대리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로 완료계 및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호원은 수행기관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당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당사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지식재산처 및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보호원 발행의 서적, 전자서적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상의 지원사업 우수 사례 홍보·전파,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와 가공·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8] 지원사업 수행기관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당 기관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 기관은 지원사업 3자협약(보호원-지원사업-수행기관) 체결을 위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각 전자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전자서명법」 제2조 내지 제5조)되는 온라인협약 체결 방식에 동의함
-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관리·감독·사후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임
-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변경 포함)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당 기관은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전 포기, 협약 후 해제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 기관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가능),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 당 기관은 당 기관이 수행한 지원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평가 및 등급화한 결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과 동일기간 내 동일인력의 투입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치됨에 동의함
- 당 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 부당거래,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지식재산처가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 기관의 제안 및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당 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충실히 응할 것임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과제번호	26-K00000			
지원유형	※ 사업공고 내 과업자서를 참고하여 지원유형 중 택 <input type="checkbox"/> 무단선점대응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type="checkbox"/> 도메인] <input type="checkbox"/> 위조형태모방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type="checkbox"/> 일반제조분야 상표 보호전략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type="checkbox"/> 일반제조분야 디자인 보호전략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분야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input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type="checkbox"/> 해외출원		과제구분	상표·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개별대응 <input type="checkbox"/> 공동대응(협의체명 기재)
기업(협의체명)	(주) 0000 ※ 협의체인 경우 간사기업명 기재 ※ 협의체인 경우 참여기업명 추가 기재 (주) 가000, (주) 나000		수행기관명	
대상제품 (대상콘텐츠)			대상국가	
상품류 (물품류)	제 00류		상표표장 (물품명)	
			도메인명	사용 중이거나 분쟁중인 도메인이름 www.xxxx.com www.xxxxxxxxx.co.kr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 지원유형별 필수과업 중 수행희망 과업 및 건수를 기재		
	선택 과업	※ 지원유형별 선택과업 중 수행희망 과업 및 건수를 기재		
선정심사 의견 반영	※ 선정심사위원회 수정·보완 요청사항 기재(필수) (협약 안내메일 참고 및 필요시 보호원 문의)		※ 수행계획서 반영 여부 및 해당 페이지 기재	

상기 및 첨부내용은 지원기업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지 않을 것과 동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③ 세부 추진계획

① 전략수립 방향 <예시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업무요소*		추진내용
선정심사 의견		※ 선정심사위원회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내용 반영부분 기재
기본	<예시> 배경 및 현황 분석	<p>※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기반하여 수행기관이 지원기업 사안에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p> <p>※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업무는 업무요소를 추가 하여,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보호원(이하, 지원기업)의 국내의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전략을 수립할 적외선 체온계 관련된 지원기업의 국내의 내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품의 미국 및 기타 수출 예정국가 최초 수출 시점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에이전트 및 유통라인 파악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판매량 및 인지도 파악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향후 사업 계획 파악 · 지원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은 현재 8개국에 6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는 적외선 체온계 관련된 상표권만을 정리 및 분석할 계획임.
	<예시> 맞춤형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 수립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의 경우, KOIPA라는 상표를 적외선 체온계에 적용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고, 향후 중국에 판매할 예정임. · 지원기업은 적외선 체온계 이외에 체온측정 어플리케이션, 적외선 온도센서 모듈 등의 사업화를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제품 라인업 확정을 고려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지원기업은 미국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온라인 판매 쇼팡몰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유통채널을 고려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 지원기업과 같이, 제품과 제품 연동 어플리케이션 및 부품 모듈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재권 전략을 분석하고 벤치마킹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예시> 사업기간 전후 수행 업무 구분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전) A 상표 출원 중 · (사업기간 후) B.C 상표를 출원 예정. A 상표 국가 확대
선택 or 대응 수단별 세부 과업 내역	<예시> 회피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업무요소에 맞춰 작성하되 업무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은 업무요소 항목을 추가하여 추진내용에 상세히 기재

② 지원기업과의 사전 협업내용 및 향후 협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③ 변동사항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④ 기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⑤ 추진일정

기 간 업무요소	추진일정(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배경 및 현황분석													
무단선점권리 (상표) 분석													
...													
...													
...													

4 수행 인력

①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계획

구분*	성명	직위	수행업무	비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반드시 변리사 자격 보유자 1명 이상 필수 투입

② 국내외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해당 시에만 기재)

※ 국내외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수행업무와 정산여부만 기재

구분	성명	자격	수행업무	정산여부
				Y/N
				Y/N
				Y/N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외대리인 정산 시, 지원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해당 해외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서비스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상기 표에 작성 할 것
- 콘텐츠IP보호유형의 선택과업 중 '계약전략'은 반드시 계약 관련 법률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며, 상기 표에 작성할 것

5 사업비 산출 개요

※ 각 항목별 총금액만 기재 세부항목은 별도 산출내역서 작성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 총 투입인력 및 총 금액 기재	※ 특이사항 등 기재
경비	외부전문가	※ 해외대리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 총비용 기재	※ 각 활용 외부전문가별 세부 금액 기재
	기타		
일반관리비			
지원기업 현물부담			
총사업비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 현황 모두 기재

수행기관명			기관 대표자			
홍길동	지원사업명	지원기업명(과제번호)	투입기간	투입율	현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주식회사 000(26-K00000)	00.00.00~00.00.00	20%	수행예정	
	총투입율			20%		
홍길동	지원사업명	지원기업명(과제번호)	투입기간	투입율	현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주식회사 000(26-K00000)	00.00.00~00.00.00	20%	수행예정	
	총투입율			20%		
홍길동						
	총투입율					
홍길동						
	총투입율					
홍길동						
	총투입율					

* 현황 :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중 선택

상기 내용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잘못된 기재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 수행기관대표자명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페이지 삭제)

참고	지원유형 및 대응 수단 과업 선택 작성 가이드라인
-----------	------------------------------------

지원유형

○ 권리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

과제번호	26-K00000	과제구분	상표·디자인
지원유형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지원유형 중 택1 <input type="checkbox"/> 일반제조 상표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대응

○ 콘텐츠 분야 IP 보호

과제번호	26-K00000	과제구분	상표·디자인
지원유형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지원유형 중 택1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분야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출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대응

○ 상대방으로 피청구 또는 상대방이 불복 또는 항소한 경우

과제번호	26-K00000	과제구분	상표·디자인
지원유형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지원유형 중 택1 <input type="checkbox"/> 무단선점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공격 <input type="checkbox"/> 도메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대응

대응 수단 과업 선택(수행희망 과업 및 건수 기재)

○ 이의신청, 출원 및 회피 전략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이의신청
	선택 과업	회수출원, 회피전략

○ 무효심판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무효심판
	선택 과업	없음

○ 행정단속 또는 형사소송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행정단속
	선택 과업	없음

○ 행정단속과 민사소송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행정단속, 민사소송
	선택 과업	없음

